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|------|
| 의 안<br>번 호 | 13-3 |
|--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3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정부의 남북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산업·경제·문화·학술·체육·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조)
- 나. 구와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·경제·문화·학술·체육·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2조)
- 다.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 (안 제3조)
- 라.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주의적 사업,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,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4조)

- 마.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둠 (안 제9조)
- 바.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과 함께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(안 제10조)
- 사.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·조정,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(안 제11조)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“없음”

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련근거

- 1)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9846호)
- 2) 「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7763호)
- 3) 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(서울특별시 조례 제5137호)

나. 예산조치 : 2013년도 예산에 3천만원 반영되었음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해당사항 없음

마. 기타사항

#### 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12. 11. 22. ~ 2012. 12. 12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권고안 반영

(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분석과-4170호, 2012.11.16.)

-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: 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신설 및 제15조(위원의 해촉) 제4호 신설

3) 가정복지과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동의

- 단,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시 전체 위촉직위원의 40% 이상 여성 위원으로 위촉 권고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,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,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남북교류협력의 추진)**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(이하 “북한”이라 한다)의 주민(법인 ·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공동으로 산업 · 경제 · 문화 · 학술 · 체육 · 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(이하 “남북교류협력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**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 · 운영 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

2. 기금의 조성 ·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3.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**제5조(기금의 운용 · 관리)**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· 관리하되, 여유 자금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.

② 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
2. 결산보고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6조(기금의 회계공무원)**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·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
2. 기금출납원 : 남북교류업무 담당팀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중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8조(결산 및 보고)**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9조(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)** 기금의 운용 ·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 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10조(위원회 구성 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·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
2.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
3. 행정관리국장,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
4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**제11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· 조정
2.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
3.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4.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2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13조(임기)**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14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**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  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**제15조(위원의 해촉)**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1.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
4.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

**제16조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·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7조(수당 등)**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**제1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